

제 1983호
2011. 4. 2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편집인: 관광공보과장이용갑
전화: 3396-4963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공 고
제2011-310호 :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 고 시
제2011-20호 : 삼일·약수연립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고시 3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3 / FAX.(02)3396-4322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1 - 310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3항,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과태료 신고분 부과고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1년 4월 28일~ 2011년 5월 12일
· 의견진술기간 : 2011년 4월 27일~ 2011년 5월 16일
2. 공고대상
· 행정처분 사전통지 : (주)하나전기조명

※ 문의처 : 중구청 교통행정과 운수지도팀 (별관3층) ☎ 3396-6222

☞ 중구청 홈페이지 (www.junggu.seoul.kr) 고시/공고란 확인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1 - 20호

삼일·약수연립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고시

1. 2003.05.02 조합설립 인가된 우리구 신당동 432-1638 외2필지 삼일·약수연립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제출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인가 하고 동법 제28조 4항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인가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사업 명칭 : 삼일·약수연립 재건축 사업

나. 사업 위치 : 중구 신당동 432-1638 외 2필지

다. 사업구역 면적 : 1,606.00㎡

라. 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명 칭 : 삼일·약수연립 재건축조합 조합장 조순자

○ 소재지 : 중구 신당동 432-173

마.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14개월

바. 사업시행인가일 : 2011. 4. 27.

사.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면적 : 1,582.97㎡

○ 규 모 :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6,896.76㎡

○ 건 폐 율 : 50.83%, 용적율 197.79%, 최고높이 18.65m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연립주택 30세대)

아. 공동 주택 규모 (전용면적 기준)

○ 84.54㎡ (25세대), 84.57㎡(5세대)

자. 근린생활시설 규모 (공급면적 기준)

○ 983.29㎡

차.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생 략”

